[별지 제21호의8서식] <신설 2020. 11. 27.>

(앞쪽)

제 호

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

1. 기관명:

2. 대표자 성명:

3. 사업장 소재지:

4. 검사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:

5. 기술인력 및 시설 · 장비 현황

기술인력	
시설	
장비	

「폐기물관리법」 제3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4제3항에 따라 위 기관을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국립환경과학원장 직인

210㎜×297㎜[백상지(150g/㎡)]

<변경 사항>

연월일	내용	확인 (서명 또는 인)

<처분 사항>

연월일	내용	확인 (서명 또는 인)

<참고 사항>

연월일	내용	확인 (서명 또는 인)